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0-006-008호 (사건번호 : 2018조일0001)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1. Facebook Incorporation

1601 Willow Road, Menlo Park, California 94025

대표이사 Mark Zuckerberg

2. Facebook Ireland Limited 4 Grand Canal Square, Grand Canal Harbour, Dublin 2, Ireland 대표이사 Gareth Lambe, 등

의결연월일 2020. 11. 25.

주 문

- 1. 피심인 Facebook Ireland Limite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위 가·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과 징 금 : Facebook Ireland Limited 6,748,000,000원
 - 나. 과 태 료
 - o Facebook Incorporation : 28,000,000원
 - ㅇ Facebook Ireland Limited : 38,000,000원
 -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3. 피심인 Facebook Ireland Limited와 Facebook Ireland Limited의 개인정보
 담당이사 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 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 기초 사실

1. 조사 개요

가. 조사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1)(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Facebook Incorporated(이하 'Facebook Inc'라 한다)와 Facebook Ireland Limited(이하 'Facebook Ireland'라 한다)의 페이스북 서비스가 국내외 언론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으로 이슈가 된 사안과 관련하여, 페이스북社('Facebook Inc'와 'Facebook Ireland'를 통칭 한다)가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4월 6일 조사에착수하였다.

나. 조사내용

① 페이스북社가 Graph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Version 1(이하 'Graph API V1'라 한다)을 통해 「제3자 앱에 가입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이하 '페이스북 친구'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사항

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신고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페이스북社가 2016년부터 대한민국 이용자 약 81만 여명의 비밀번호를 평문 으로 저장한 사항
- ③ 페이스북社가 대한민국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사항
- ④ 페이스북社가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항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페이스북社에 대해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1호,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2018. 4. 20., 2018. 8. 3., 2019. 3. 25., 2019. 6. 20., 2019. 11. 27., 2020. 1. 13., 2020. 5. 6., 2020. 5. 26., 2020. 6. 17., 2020. 6. 30., 2020. 8. 21., 2020. 8. 27., 2020. 10. 7.), 페이스북社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8. 5. 22., 2018. 6. 8., 2018. 9. 28., 2019. 4. 17. 2019. 4. 26., 2019. 5. 24., 2019. 7. 19., 2019. 12. 13., 2020. 2. 24., 2020. 6. 1., 2020. 6. 12., 2020. 6. 29., 2020. 7. 3., 2020. 9. 7., 2020. 10. 16.) 및 페이스북 서비스의 동작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분석하였고, 피심인에게 출석을 요구(2019. 5. 17.)하여 피심인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출석조사 (2019. 5. 23. ~ 24.)를 실시하였다.

2. 피심인의 지위 및 현황

가. 피심인의 지위

페이스북社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에 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법인)는 2018년 7월 14일 Facebook Ireland에서 Facebook Inc로 변경되었고, 현재 Facebook Inc와 Facebook Ireland가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국가는 아래와 같다.

	Facebook Inc	Facebook Ireland
2018. 7. 13. 이전	미국·캐나다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국가 (한국 포함)
2018. 7. 14. 이후	유럽을 제외한 국가 (한국 포함)	유럽

따라서 페이스북社의 2개 법인은 각각의 법위반 행위 시점별로 대한민국 이용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피심인의 지위에 있다.

구분	피심인 (행위 주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Facebook Ireland('18.7.1. 이전)			
비밀번호 암호화조치 위반	Facebook Ireland('18.7.13. 이전), Facebook Inc('18.7.14. 이후)			
개인정보 이용내역 미통지	Facebook Ireland('18.7.13. 이전), Facebook Inc('18.7.14. 이후)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여부	Facebook Ireland 및 Facebook Inc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 Facebook Inc 및 Facebook Ireland의 설립일자, 종업원 수, 자본금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Facebook Inc 일반현황 >

CEO	설립일자	종업원 수	자본금	전체 매출액('17.)
Mark Zuckerberg	2004. 7. 29.	25,105명 (2017. 12. 31.)	미화 백만달러	미화 달러 (2017. 12. 31.)
주소	1601	Willow Road, Men	o Park, California 9	94025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없음	담당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Facebook Ireland 일반현황 >

이사	설립일자	종업원 수	자본금	전체 매출액('17.)
Gareth Lambe 외 3명	2008. 10. 6.	739명 (2016. 12. 31.)	유로	유로 (2017. 12. 31.)
주소	4 Grand Canal Square, Grand Canal Harbour, Dublin 2, Ireland			olin 2, Ireland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없음	담당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피심인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2004년 2월 4일부터, 한국어로는 2008년 5월경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의 제공하는 수단별 서비스 시작일은 아래와 같다.

구분	종류	서비스	서비스 현재		총 버전 수
TE	5π	시작일	버전	시작일	8 미연 ㅜ
	Web	2004.02.0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Facebook	iOS	2008.07.10	173.0	2018.05.25	185
	Android	확인불가	174.0	2018.05.28	222
Facebook Lite	Android	2015.06.04	96.0	2018.05.30	104
Messenger	iOS	2011.08.09.	167.0	2018.05.24	172
iviesserigei	Android	2011.08.09.	167.0	2018.05.21	163
Messenger Lite	Android	2016.10.02	32.0	2018.05.14	33

다.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피심인은 2018년 9월 28일 제출한 자료에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용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페이스북 서비스 내 이용자가 입력한 프로필 상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심인의 담당자는 2019년 5월 23일 출석조사에서 이용자의 계정 보안, 언어설정, 다양한 기능 및 광고 등을 포함한 페이스북 서비스의 핵심 영역에서 거주지예측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피심인이 2018년 5월 22일 제출한 2018년 5월 15일 기준으로 접속방법에 따라 분류된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종류	전 세계 이용자 (앱 설치 수)	대한민국 이용자 (앱 설치 수)
	Web		
Facebook	iOS		
	Android		
Facebook Lite	Android		
Messenger	iOS		
iviesserigei	Android		
Messenger Lite	Android		

피심인이 2018년 9월 28일 제출한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페이스북 서비스의 월간 및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전 세계		
대한민국2)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에 가입하면 피심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되므로,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상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최소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대한민국

라. 페이스북 서비스의 대한민국 매출액

피심인은 매출액과 관련한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2018년 5월 22일 및 2018년 6월 8일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8년 9월 28일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3) 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출액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므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고, 2019년 5월 23일 피심인의 담당자가 출석하여 위원회의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만 답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19일 '납세국가가 대한민국인 광고주에 의해 페이스북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 추정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4)

2019년 7월 19일 피심인이 제출한 '납세국가가 대한민국인 광고주에 의해 페이스북

²⁾ 연도별 페이스북 서비스의 전체 월간 활성 이용자 중 한국 이용자 비율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율						

³⁾ 피심인이 매출액을 보고하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고, 국가별 매출액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매출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있고, 제출된 매출액은 데이터 소스를 종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일부는 감사를 받지 않은(unaudited) 매출액 원자료에 기초하고 있다고 답변함(2019.7.19.)

⁴⁾ 피심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매출은 광고에서 발생하며, 페이스북 서비스와 별개의 다른 서비스 및 제품에서 발생하는 비광고 매출액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변함(2019.12.13.)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 추정치'는 아래와 같다.

(단위: 미화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 세계						
대한민국						

피심인은 특정시장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용자 활동에 근거한 매출을 기록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①납세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광고주가 대한민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한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광고 매출액을 제품별로 별도로 기록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②페이스북 서비스와 관련 없는 인스타그램 등의 매출액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제3자 제공 수단(Graph API V1)

피심인은 제3자 개발자(Third-Party Developer)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인 Graph API V1을 도입·운영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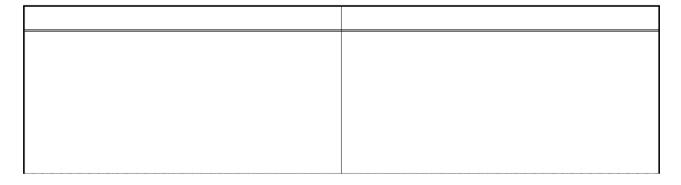
Graph API V1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등을 통해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제3자 앱을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3자 앱에 함께 제공되도록 운영되었다.

<Graph API V1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제공 구조도>



피심인은 페이스북의 핵심에는 소셜 그래프가 있고, Graph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페이스북 소셜 그래프에 있는 객체(예: 사람, 사진, 이벤트 및 페이지) 사이의 연결(예: 친구 관계, 공유 콘텐츠, 사진 태그)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보여준다고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api)에서 밝힌 바 있다.5)

피심인의 담당자는 2019년 5월 23일 출석조사에서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자신의 것들을 공유하는 경험을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목적으로 Graph API V1을 출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6)



^{5) 2012. 9. 25.}의 해당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At Facebook's core is the social graph; people and the connections they have to everything they care about. The Graph API presents a simple, consistent view of the Facebook Social Graph, uniformly representing objects in the graph (e.g., people, photos, events, and pages),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m (e.g., friend relationships, shared content, and photo tags)."가 확인됨

⁶⁾ FTC 조사 결과, 피심인은 제3자 개발자가 광고에 돈을 쓰거나 상호 데이터 공유를 하는 등 피심인에 얼마나 큰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계속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Complaint for Civil Penalties, Injunction, and Other Relief, filed on July 24, 2019, 이하 'FTC Complaint')

※ 페이스북社의 최초 답변이 수정된 경우 원 답변(삭제줄)과 수정사항(밑줄)을 함께 표시하였음(이하 같음)

2) 제3자 제공 기간

피심인은 2007년 5월 24일부터 7 2018년 6월까지 Graph API V1 등을 통해 제3자 앱(Third-Party App) 사용자 8) 및 페이스북 친구 9)의 개인정보가 제3자 개발자 (Third-Party Developer)에게 제공되도록 페이스북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피심인이 2018년 5월 22일 제출한 Graph API의 버전별 출시일 및 지원중단일은 아래와 같으며¹⁰⁾, Graph API V1은 2010년 4월 21일 공식 출시하여 2015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였다¹¹⁾.

버전	출시일	지원중단일	버전	출시일	지원중단일
v3.0	2018. 05. 01.	미정	v2.5	2015. 10. 07.	2018. 04. 12.
v2.12	2018. 01. 30.	2020. 05. 01.	v2.4	2015. 07. 08.	2017. 10. 07.
v2.11	2017. 11. 07.	2020. 01. 30.	v2.3	2015. 03. 25.	2017. 07. 08.
v2.10	2017. 07. 18.	2019. 11. 07.	v2.2	2014. 10. 30.	2017. 03. 25.
v2.9	2017. 04. 18.	2019. 07. 18.	v2.1	2014. 08. 07.	2016. 10. 30.
v2.8	2016. 10. 05.	2019. 04. 18.	v2.0	2014. 04. 30.	2016. 08. 07.
v2.7	2016. 07. 13.	2018. 10. 05.	V1.0	2010. 04. 21.	2015. 04. 30.
v2.6	2016. 04. 12.	2018. 07. 13.			

피심인은 2015년 4월 30일 공식적으로 Graph API V1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 제3자 앱에 페북친구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제3자 개발자(이하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68개의 제3자 앱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도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다.12)

피심인은 제3자 개발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제3자 개발자가 페이스북 서비스 광고를 통해 피심인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제공하는지를 고려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13)

⁷⁾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제3자에게 동의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2007년 5월 24일부터 2014년 4월까지 활용한 페이스북의 Graph API V1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로그인 기능 이용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라는 답을 하여 Graph API V1이 2007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⁸⁾ 제3자 앱 사용자 : Graph API V1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3자 앱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

⁹⁾ 페이스북 친구 : Graph API V1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3자 앱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해당 제3자 앱을 설치사용하지 않는 페이스북 이용자

¹⁰⁾ Graph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변경사항은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graph-api/changelog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20년 2월 2일 기준 Version 5.0까지 확인됨

¹¹⁾ 피심인은 2007년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들이 페이스북에 통합되고 페이스북의 '소셜 그래프'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시 제3자 앱은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페이스북은 2010년 4월 21일, 혁신적이고 산업을 선도하는 세분화된 데이터 승인 모델(Granular Data Permissions model)을 사용한 Graph API V1을 출시하였다고 설명함(2019.5.24.)

¹²⁾ 미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 조사 결과, 피심인은 일부 Whitelisted Developers에게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2018년 6월까지 활성 상태로 유지하였고, 이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FTC Complaint)

¹³⁾ FTC Complaint 88.~91.항목

3)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항목

위원회는 Graph API V1을 통해 제3자 앱에 제공될 수 있었던 제3자 앱 사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Graph API V1 관련 문서, 소스코드 및 사용설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19년 7월 19일 Graph API V1 개발자 가이드를 제출하였다.

Graph API V1 개발자 가이드에 따르면 제3자 개발자는 피심인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3자 앱 사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와 권한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3자 앱을 개발할 수 있었다.¹⁴)

¹⁴⁾ FTC 조사 결과, 제3자 개발자는 Graph API V1을 통해 페이스북 친구의 birthday, bio, activities, news article activity, books activity, check-ins, current city, education history, events, fitness activity, game activity, group, hometown, interests, likes, music activity, notes, online presence, Open Graph activity, photos, questions, relationships, relationship details, religion/political views, status, subscriptions, videos, video-watch activity, website URL, work history 등 개인정보를 피심인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확인함

① Baisc Info (default)

	이용자 ID(프로필에	연결되는 숫자 문자열)
	이용자 전체이름	
	이용자 이름	
	이용자 성	
basic_info	프로필 URL	
	이용자가 서비스 내	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별명
	성별	
	지역	
	연령대	
	기타 공개 정보	
email	이메일 주소	

② Extended Profile Properties

User Permission		Friends Permission	
	프로필 내용		친구의 프로필 내용
	활동사항		친구의 활동사항
	생년월일		친구의 생년월일
	로그인여부		친구의 로그인여부
	학력		친구의 학력
	기념일		친구의 기념일
	그룹		친구의 그룹
	출신지		친구의 출신지
	관심사		친구의 관심사
	좋아요		친구의 좋아요
	위치정보		친구의 위치정보
	담벼락		친구의 담벼락
	사진		친구의 사진
	질문		친구의 질문
	가족관계		친구의 가족관계
	관계선호도		친구의 관계선호도
	종교 및 정치관		친구의 종교 및 정치관
	현재상태		친구의 현재상태
	구독		친구의 구독
	동영상		친구의 동영상
	웹사이트		친구의 웹사이트
	이력		친구의 이력

③ Extended permissions

Read		Publish	
	친구목록 조회		광고관리
	인사이트 데이터(포스팅 및 좋아요 등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 조회		이벤트생성
	메일박스 조회		친구리스트 관리
	친구요청 현황 조회		알림 관리
	모든 이용자 게시글 및 뉴스피드 조회		게시글 생성(Open Graph API 사용을 위한 기본 퍼미션)
	페이스북 채팅과 통합 로그인 기능의 어플리 케이션 제공		타임라인에 게시
	온/오프라인 현황		이베드 회사
	친구의 온/오프라인 현황		이벤트 참여

4 Open Graph Permissions

User Permission		Friends Permission	
게시글 생성(Open Graph API 사용을 위한 기본 퍼미션)			
	게시글 내 모든 음악 검색		친구의 게시글 내 모든 음악을 검색
	게시글 내 모든 뉴스 검색		친구의 게시글 내 모든 뉴스를 검색
	게시글 내 모든 동영상 검색		친구의 게시글 내 모든 동영상을 검색
	게시글 내 특정 제3자 앱 관련 내용 검색		친구의 게시글 내 특정 제3자 앱 관련 내용을 검색
	게임과 관련된 활동을 검색		친구의 게임과 관련된 활동을 검색

⑤ Pages

페이지 관리
페이지 메일박스 조회

페이스북 서비스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설정에 따르면 제3자 개발자는 피심인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주의 페이스북 친구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소개(프로필 정보)	생일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학력 및 경력	활동, 관심사, 좋아하는 것	내 웹사이트
내가 온라인인 경우	내 타임라인 게시물	출신지
거주지	관심 있는 성별	종교관과 정치 성향
내 앱 활동	(Default Off)	(Default Off)

그러나, 피심인은 제3자 개발자가 Graph API V1을 사용하여 제3자 앱 사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도록 앱을 개발·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을 두지 않았으며, 2014년 4월 도입된 Graph API V2에서 앱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앱만이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4)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

가) Global Science Research 및 Cambridge Analytica에 제공된 개인정보

Aleksandr Kogan¹⁵⁾(이하 'Kogan')은 Graph API V1을 사용한 「This is your digital life 앱」(이하 'Life 앱')을 개발하였고, 피심인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Kogan 및/또는 그의 회사인 Global Science Research(이하 'GSR')가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Life 앱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였다.

¹⁵⁾ Cambridge University의 심리학 교수이자 연구자

피심인은 전 세계에서 약 30만 명, 대한민국에서 184명이 Life 앱을 사용하였고, 전 세계에서 약 8,700만 명, 대한민국에서 85,709명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Life 앱에 제공된 것으로 추산하였다.

피심인의 자료에 따르면, GSR은 피심인으로부터 Life 앱을 사용한 페이스북 이용자와 그들의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아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구분	Life 앱을 사용한 페이스북 이용자	Life 앱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GSR에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등 공개 프로필 생년월일 거주 도시 이용자가 태그한 사진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이용자 타임라인에 게재된 포스팅 뉴스피드 포스트 친구 목록, 이메일 주소 페이스북 메시지(메시지 내용 포함) 	 이름, 성별 등 공개 프로필 생년월일 거주 도시 친구가 태그한 사진 친구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그 중 GSR이 제공받은 대한민국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다.

구분	Life 앱을 사용한 페이스북 이용자(184명)		용자(184명) Life 앱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85,70	
0.000.41	· 이름, 성별 등 공개 프로필	181명	· 이름, 성별 등 공개 프로필	85,709명
GSR에 제공된 대한민국	· 생년월일 · 친구 목록 ·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155명	· 생년월일 · 거주 도시 · 친구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69,724명
이용자의	· 거주 도시	154명		
개인정보	· 페이스북 메시지(메시지 내용 포함)	1명	· 친구가 태그한 사진	24명
항목	· 알 수 없음(계정삭제 등)	3명		

Life 앱은 Graph API V1을 통해 2015년 4월 30일까지 Life 앱을 사용한 페이스북 이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를 피심인로부터 계속 제공받을 수 있었다.

GSR은 2014년 4월 30일 Graph API V2가 출시되자 Graph API V2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4년 5월 6일 피심인에게 앱 리뷰를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앱 리뷰 결과 Life 앱이 승인받아 확보한 데이터가 '이용자의 앱 내 경험' 개선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2014년 5월 7일 GSR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Life 앱은 Graph API V1에서 Graph API V2로 전환되는 2014년 4월 3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페이스북 서비스로부터 Life 앱사용자 및 해당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었다.

피심인은 2015년 5월 1일부터는 Graph API V1을 사용하여 개발된 Life 앱 등 제3자 앱이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를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GSR을 포함한 제3자 개발자에게 제3자 앱이 Graph API V1 상에서 운영되는 기간 동안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앱 사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다.

2015년 12월 11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이 "GSR이 Life 앱을 통해 페이스북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세계적으로 정치, 대정부, 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 SCL Elections Ltd(이하 'SCL')와 Cambridge Analytica(이하 'CA')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피심인은 GSR이 페이스북의 서비스 정책16)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12월 17일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Life 앱을 금지시켰다.

피심인이 2016년 Kogan이 제공한 증명서와 Kogan의 최근 진술에 근거하여 2019년 7월 19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SR은 Life 앱을 사용한 페이스북이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를 Toronto Laboratory for Social Neuroscience, University of Toronto와 Eunoia Technologies, Inc 및 SCL/CA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GSR은 University of Toronto 내 Toronto Laboratory for Social Neuroscience 근무 연구원인 Daniel Randles에게 'Life 앱을 승인한 약 13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에서 수집한 약 13만 명의 설문조사 응답 예측치', 위치 및 생년월일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University of Cambridge의 Prosociality and Well-being Laboratory에 근무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Kogan의 연구 그룹 내 구성원들도 Kogan이 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간에 분석 목적으로 고용기간 동안 연구실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¹⁶⁾ Facebook Platform Policy(2015.03.25.): Don't sell, license, or purchase any data obtained from us or our services. Don't transfer any data that you receive from us (including anonymous, aggregate, or derived data) to any ad network, data broker or other advertising or monetization-related service.

GSR은 Life 앱을 통해 수집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페이스북 서비스 정책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피심인은 2015년 12월 11일 The Guardian의 언론보도 전까지는 GSR이 Life 앱을 페이스북 서비스 정책을 위반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社에 제공된 개인정보

피심인은 ㈜ 17)가 개발한 앱 등이 2012년 5월부터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운영되도록 하였다. ㈜ 는 SNS 데이터분석, 고객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이 회사가 페이스북 서비스를 통해 운영한 앱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社 앱 정보		이 제출한 : 기간	㈜ 서비스	가 제출한 : 기간	앱 설치
앱 이름	개인정보 수집 방법	출시	종료	출시	종료	이용자 수

¹⁷⁾ 조사과정에서 Cambridge Analytica 사건과 유사하게 대한민국 앱이 제재 받거나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피심인의 담당자는 라는 한국 앱이 최근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답변함(2019.5.23.)

(주) 는 2012년 10월 19일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R&D 연구용역 "

" 과제를 수행하였다.

(주) 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201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 3,316,334명의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항목	데이터 개수	데이터 크기(GB)
글별 영향을 준 사용자	328,532,127	108.9
작성한 글	222,862,482	368.7
글에 포함된 키워드	161,552,763	148.8
친구의 글	70,810,779	24
사용자의 글	277,406,589	124.8
일별 활동 기록	2,513,994	20.1
시간별, 요일별 활동 기록	3,051,492	5.4
수집된 소셜 데이터	3,784,572	14.7
분석된 소셜 데이터	1,005,906	32.1
사용자 별 키워드 목록	4,375,779	2.4
사용자별 랭킹 변화	3,282,117	22.2
총합	1,079,178,600	8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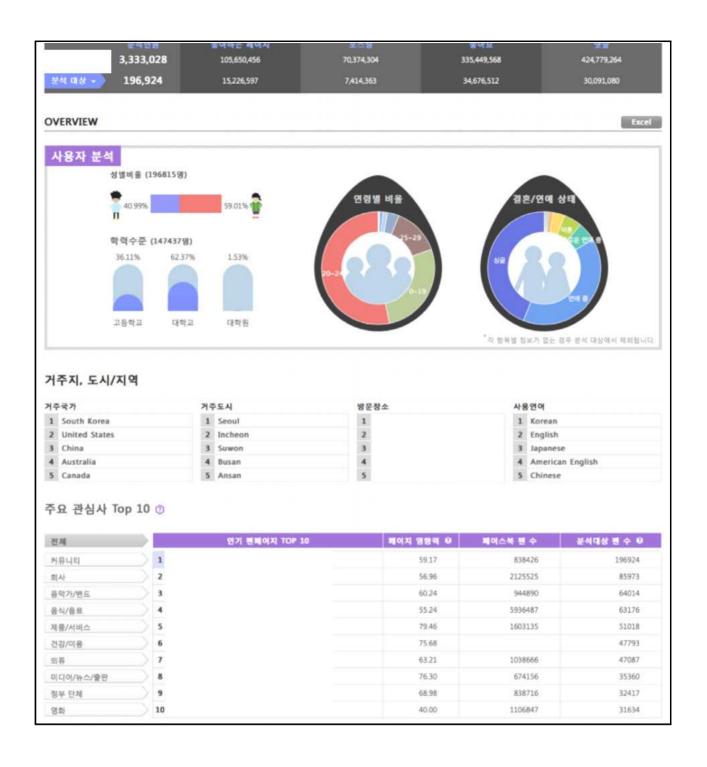
(주) 는 Graph API V1을 통해 앱을 사용한 페이스북 이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의 이름·성별 등 프로필 정보, 생년월일, 결혼상태, 학력, 거주지, 사용언어, 방문한 장소, 관심사,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등을 피심인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는 앱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하면서 앱을 사용한 페이스북 이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피심인로부터 제공받았고, 이러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등 다양한 사업목적을 위한

등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 는 2014년 2월 10일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3,333,028명 중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이용자 196,924명 및 페이스북 팬페이지 158,132명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였다.18)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경우 성별을 입력한 196,815명 중 남자가

^{18) 2014}년 2월 10일 11시 59분 기준으로 ㈜ 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3,333,028명 중 팬페이지 이용자는 페이스북 팬 838,426명의 23.49%에 해당하는 196,924명이고, 팬페이지의 이용자는 페이스북 팬 944,882명의 16.74%에 해당하는 158,132명임

40.99%, 여자가 59.01%이고, 학력을 입력한 147,437명 중 고등학교 36.11%, 대학교 62.37%, 대학원 1.53%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연령별 비율, 결혼/연애 상태, 거주지, 도시/지역, 주요 관심사 Top 10, 주요 이용시간, 친구에게 공유한 방문지 등이 분석되었다.

또한 2014년 2월 14일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3,343,431명 중 팬페이지 이용자 1,917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 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 등 15개 기업에 개인정보를 분석한 내용 등을 제공하였다.

다) Graph API V1을 통해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

피심인은 2007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Graph API V1을 통해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되도록 페이스북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Graph API V1을 사용한 제3자 앱은 해당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페이스북이용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 외 개인정보와 페이스북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 (이하 'Access 권한'이라 한다)을 필요로 한다.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Graph API V1을 사용한 제3자 앱은 약 6,000만개, 대한민국 IP 기준으로는 약 20만개이고,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된 제3자 앱 중 2012년 1월 또는 앱 개발일 중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Access 권한이 있는 앱은 약 10,272개이다.

구분		제3자 앱의 수
Graph API V1을 이용하여	전 세계	약 60,000,000개
개발된 앱	대한민국 IP 사용	약 200,000개
Access 권한이 있는 앱	대한민국 (2012.1월 이후)	10,272개

위원회는 Graph API V1을 통해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 앱을 설치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수와 제3자 앱에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 Access 권한이 있는 앱의 목록과 해당 앱을 설치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수 및 페이스북 친구의 수 등을 제출할 것을 피심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는 Graph API V1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3자 앱을 설치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총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제3자 개발자가 개발한 제3자 앱 중에서 Access 권한이 있는 제3자 앱 10,272개의 대한민국 사용자 수는 중복을 포함하여 25,461,468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제3자 앱에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19)에 대해서는 "제3자 앱사용자가 해당 앱을 설치한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3자 앱이 접근할 수 있게 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심인의 담당자는 2019년 5월 23일 출석조사 과정에서 특정 앱을 지정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Life 앱과 같은 방법으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¹⁹⁾ FTC 조사 결과, 제3자 앱은 경우에 따라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크게 초과하여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하였고 (약 33배인 4억5천만 건도 확인됨), 2013년 9월 페이스북社 자체감사 후, 피심인의 직원은 제3자 개발자가 매달 8천억 건 이상의 API를 호출하고 페이스북 친구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한이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2014년에는 매일 13,000개 이상의 앱이 페이스북 친구의 데이터를 요청한다는 보고서를 검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2019년 6월 20일 피심인에게 ㈜ 에서 개발한 제3자 앱 중 Access 권한이 있는 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2018년 3월 30일자로 금지된 ㈜ 의 앱 목록20)을 제출하고 해당 앱이 Access 권한을 이용한 앱인지 여부와 해당 앱을 설치한 페이스북 이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 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심인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2020년 2월 24일 앱을 비롯한 8개 앱의 생성일 및 사용자 수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²⁰⁾ 피심인은 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일부로 이러한 앱들이 금지된 것이며 반드시 어떠한 데이터 오용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또한 해당 앱 목록에는 다른 버전의 Graph API(V1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를 사용한 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함(2019.7.19.)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서비스가 아닌 Life 앱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중 184명만 해당 앱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5,709명의 대한민국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가 GSR에 제공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비스로서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81,528명이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는 2014년 2월 10일 기준으로 최소 3,333,028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및 그의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가 ㈜ 에 제공되었다.

※ 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는 제공된 총수(3333,028명)에서 페이스북 이용자(81,528명)를 뺀 3,251,500 명으로 판단됨

또한 피심인이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68개 제3자 앱의 대한민국 사용자는 중복을 포함하여 2,290,418명이고, 대한민국 제3자 개발자가 개발한 제3자 앱 중에서 Access 권한이 있는 10,272개 제3자 앱의 한국인 사용자는 중복을 포함하여 총 25,461,468명이다.²¹)

※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평균 친구 수(미국 기준)는 '14.1.1. 355명에서 '18.6.1. 47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Life 앱 85,709명, 앱 3,251,500명,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68개의 제3자 앱과 "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이 있는 10,272 개의 앱을 통해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중복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월간 이용자 1,800만 명보다 많은 수의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가 제3자 앱에 제공된

^{21) &}quot;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이 있는 10,272개의 앱 중 가장 많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가 사용한 앱은 2012년 8월 23일 생성된 SamsungGalaxy 앱으로 1,406,618명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것으로 추정되나,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2012년 이후 최소 330만명²²⁾ 이상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3자 앱의 서버에 저장되어 페이스북 및 제3자 앱의 서비스와 무관한 목적²³⁾으로 분석·활용되는 등 오·남용되었다.

구분(앱 수치)	제3자 앱 사용자 수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	비고
GSR 앱	184명	85,709명	피심인 제출
앱	81,528명	3,251,500명	자료 확인
한국인 개발 제3자 앱(10,272개)	25,461,468명(중복포함)	_	친구수 미제출
특정 제3자 개발자 앱(68개)	2,290,418명(중복포함)	-	친구수 미제출

5) 피심인의 데이터 정책 고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

가) 제3자 앱 사용자에 대한 "허가 요청"

피심인은 제3자 개발자가 페이스북 이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3자 앱을 사용하려는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허가할 수 있는 "허가 요청" 화면을 구성·제공하였고, 해당 화면의 예시는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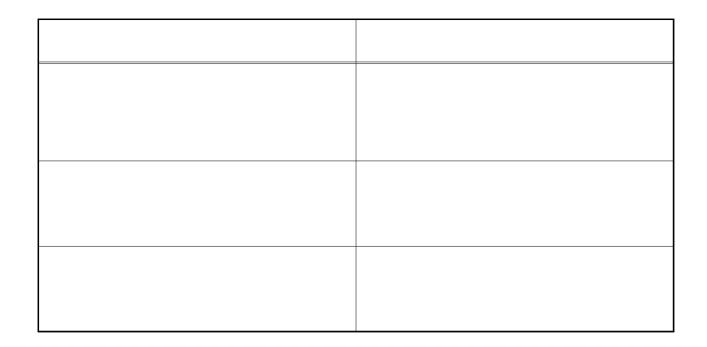
<그림1> 제3자 앱의 허가 요청 화면

²²⁾ GSR 앱 및 앱에 제공되어 서버에 저장된 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3,337,209건이고 일부 중복될 수 있음

²³⁾ Life 앱을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美 대선 '정치 심리전'에 이용, 앱을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에 이용

페이스북 이용자가 제3자 앱을 사용하려	고 할 때 나타나는 <그림1>의 "허가 요청"
화면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화면으로 피수	님인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3자 앱을 사용하려는 페이스북 이용	· 가는 <그림1>의 "허가 요청" 화면에서
"내 친구들의 정보에 접근" 항목이 있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해당 제3자 앱에 제공한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또한 피심인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	정보를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페이스북 친구에게는 개인정보·	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역	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표시한 화면 등을 통해 안	내하거나 <그림1>의 "허가 요청" 화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동의나 요청을	을 한 사실은 없다.

"허가 . 사용하	요청" 화면과 같이	페이스북 친구. 용자가 "허가하기	의 개인정보를 요구	이용자에게 <그림1>의 하는 경우 제3자 앱을 -북 친구의 개인정보는
누구인		은 없고, 제공된		-지, 제공받은 제3자는 가 삭제하도록 요청할



나) 페이스북 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피심인이 Graph API V1을 통해 '제3자 앱 사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되도록 페이스북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가입을 받는 화면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페이스북 서비스 가입 화면

facebook



2011년 3월 이전에 대한민국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림2>에서 성명, 이메일,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페이스북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다.

피심인은 <그림2>에서 성별을 선택하는 체크박스 아래에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이용 약관에 동의하며 쿠키 사용을 포함한 데이터 사용 정책을 숙지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문구를 보여주고 "이용약관", "쿠키 사용", "데이터 사용 정책"을 클릭하는 경우 팝업을 통해 각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2011년 3월부터는 <그림2>에서 가입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닌 <그림3>과 같이 "I agree to Facebook's Privacy Policy" 및 "I agree to Facebook's Terms of Service"에 동의하는 것을 묻는 별도의 화면을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해당 화면에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 중이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출하였다.



<그림3> 페이스북 서비스 가입 화면(2011.3.~)

2013년 11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이용자가 볼 수 있었던 페이스북 서비스의 데이터 사용 정책이 게시된 화면은 <그림4>와 같다.

<그림4> 페이스북 서비스의 데이터 사용 정책 화면

쿠키 및 유사한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데이터 사용 정책

최종 수정일: 2013년 11월 15일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 및 정보의 이용 방법 저희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무엇이며 이 정보가 어떻게 이 용되는지 알아보세요.

Facebook에서 공유하기 및 회원님 찾기 facebook.com에서 회원님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타 웬사이트 및 앱

소셜 플러그인과 같은 기술 및 회원님과 친구들이 Facebook 외부에서 사용하는 게임, 앱 및 웹사이트와 정보 •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가 공유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광고 및 Facebook 콘텐츠

광고주와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게재하는 • Facebook 사이트 거버넌스 페이지 방법 및 광고와 소셜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 아보세요

쿠키, 픽셀, 기타 유사한 기술

회원님에게 서비스, 기능 및 관련 있는 광고와 콘텐츠를 제 공하기 위해 쿠키, 픽셀, 도구(예: 로컬 스토리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세요.

그 밖의 공지 사항

저희가 이 정책을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저희 데이터 사용 정책이나 관함에 대해 질문이나 불만 사항이 있 물 경우 우편으로 연락하세요. 미국이나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Facebook Inc., 1601 Willow Road, Menlo Park, CA 94025 주소를 이용하세요, 미국이나 캐나다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Facebook

Treland Ltd., Hanover Reach, 5-7 Hanover Quay, Dublin 2 Treland 주소를 이 용하세요, 또한 이 도움말 페이지를 통해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리소스

- 인터랙티브 도구
- Facebook 개인정보취급방침 페이지
- · Facebook 안전 페이지
- 데이터 사용 정책 전문 보기

데이터 사용 정책 화면에서 "기타 웹사이트 및 앱 - 소셜 플러그인과 같은 기술 및 회원님과 친구들이 Facebook 외부에서 사용하는 게임, 앱 및 웹사이트와 정보가 공유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를 누르는 경우,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이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그림5>와 같이 나타난다.

데이터 사용 정책 → 다른 웹사이트 및 앱

다른 웹사이트 및 앱

Facebook 플랫폼 정보

Facebook 플랫폼(또는 단순히 플랫폼)은 저희가 회원님과 친구들이 게임, 앱, 웹사이트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돕는 수단입니다. 또한 Facebook 플랫폼은 회원님께서 친구들에게 Facebook을 소 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Facebook 플랫폼은 회원님의 웹 상에서의 활 동이 보다 개인화되고 교류의 범위도 넓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이들 게임, 앱, 웹사이트는 Facebook의 일부도 아니고 Facebook이 통제하지도 않는 외부 개발자나 업체에 의해 개발되고 관리되므로 이들이 회원님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앱과 공유하는 정보의 관리

회원님이 게임을 하거나 회원님의 Facebook 계정을 이용해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회원님의 타임라인에 앱을 추가하는 등 게임, 앱, 웹사이트(때로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으로도 통칭)와 연 결 관계를 맺으면 저희는 이들에게 회원님의 사용자 아이디와 공개 정보를 포함한 기본 정보('공 개 프로필'이라고 불림)를 제공합니다. 또한 회원님의 기본 정보의 일부로서 친구들의 사용자 아 이디(친구 리스트라고도 불림)도 제공합니다.

친구 리스트는 앱에서 친구들을 찾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회원님의 앱 상에서의 교류에 도움을 줍니다. 회원님의 사용자 아이디는 앱 상에서의 회원님의 계정과 회원님의 Facebook 계정을 연결시켜 주고 앱은 회원님의 공개 정보와 친구 리스트를 포함한 기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회원님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회원님이 모든 사람과 공유하도록 설정한 정보 뿐 아니라 모두에게 항상 공개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앱이 회원님의 소식, 사진,좋아요를 클릭한 대상 등의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회원님의 허락을 일일이 구해야만 합니다.

사용 중인 앱 설정은 회원님이 사용하는 앱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님은 회원님이 이들앱에 부여한 권한, 마지막으로 앱이 회원님의 정보에 접근한 시간, 앱이 회원님을 대신해 게시한회원님의 타임라인 소식과 활동의 공개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앱을 삭제하거나모든 플랫폼 앱을 비활성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 앱을 비활성화하면 친구들이 해당 앱을 이용할 경우에도 회원님의 아이디가 앱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Facebook을 통해게임, 앱, 웹사이트를 전혀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사용 중인 앱 앱, 게임, 웹사이트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 관리 3월 17일 Visited™ ※ 원하지 않는 스팸성 앱 삭제

✔ 모든 플랫폼 앱 끄기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이라는 제목의 페이지에서는 "앱과 공유하는 정보의 관리" 내용에 "앱이 회원님의 소식, 사진, '좋아요'를 클릭한 대상 등의 추가 정보를 필요로할 경우 회원님의 허락을 일일이 구해야만 합니다."라는 내용과 "사용 중인 앱설정은 회원님이 사용하는 앱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님은 회원님이 이들앱에 부여한 권한, 마지막으로 앱이 회원님의 정보에 접근한 시간, 앱이 회원님을

대신해 게시한 회원님의 타임라인 소식과 활동의 공개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앱을 삭제하거나 모든 플랫폼 앱을 비활성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 앱을 비활성화하면 친구들이 해당 앱을 이용할 경우에도 회원님의 아이디가 앱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Facebook을 통해 게임, 앱, 웹사이트를 전혀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해당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는 경우 "회원님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앱을 사용할 때 공유되는 정보 관리하기" 내용에는 "그러나 만약 회원님께서 자신의 좋아요 설정 관련 정보를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한 경우 앱은 친구에게 이 정보의 공유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광고 앱, 웹사이트 설정 페이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앱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공개 정보와 친구 리스트에 대한 접근을 막도록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그림 6>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6> 다른 웹사이트 및 앱 화면(2)

회원님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앱을 사용할 때 공유되는 정보 관리하기

이메일이나 웹 상의 다른 곳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님이 Facebook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다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님이 Facebook 상에서 공유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용하는 게임, 앱, 웹사이트를 포함한 제상자와 이를 다시 공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원님의 친구와 회원님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앱을 사용할 때 더 개인화되고 소설화된 앱 이용을 위해 종종 회원님의 정보를 앱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 중 한명이 친구들이 듣고 있는 음악 리스트를 제공하는 음악 관련 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 친구는 앱에 자신의 친구 리스트(회원님의 ID 포함)을 제공해 앱이 친구 중 같은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친구는 또한 회원님이 Facebook 상에서 좋아요를 성정한 음악을 고유하고자 한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한 회원님이 주로 모든에게 공개

한 경우 앱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원님께 서 자신의 좋아요 설정 관련 정보를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한 경우 앱은 친구에게 이 정보의 공유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광고, 앱, 웹사이트 설정 페이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앱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공개 정보와 친구 리스트에 대한 접근을 막도록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페이스북 서비스의 데이터 정책과 이용약관에서는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표시한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다)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인정보 제공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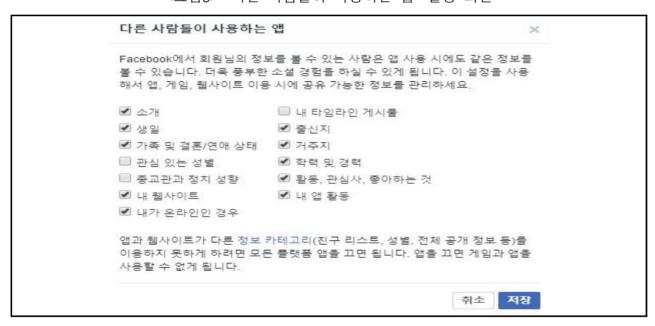
피심인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및 작성한 게시물 등의 공개 범위를 "친구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림7>의 메뉴를 제공하였다.

<그림7> 개인정보 및 게시물 등의 공개 범위 설정 화면



또한 피심인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제3자 앱'에 제공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림8>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Apps Others Use)"이라는 도구를 제공하였다.

<그림8>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설정 화면



또한 피심인은 <그림9>의 "앱, 플러그인, 웹 사이트 끔"이라는 도구를 제공하였고, 페이스북 이용자가 해당 도구에서 "플랫폼 끄기"를 하는 경우 제3자 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개인정보가 제3자 앱에 제공되지 않는다.

맵, 플러그인, 웹사이트 끔

플랫폼을 끄면 타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Facebook 통합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들 앱과 웹사이트를 Facebook과 함께 사용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을 다시켜세요. 플랫폼을 사용하면 회원님이 웹에서 사용하는 다른 앱과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앱에서 Facebook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acebook은 회원님에게보다 맞춤화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님이 타사 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플랫폼 앱을 끌 경우:

- 회원님은 Facebook을 이용해 웹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 친구들이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님과 교류할 수 없게 됩니다.
- 빠른 개인화 기능 또한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플랫폼 끄기

취소

그러나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그림8>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성별", "종교관과 정치 성향" 항목 외에 모든 항목이 체크되어 있었고, <그림9>의 "앱, 플러그인, 웹 사이트 끔"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설정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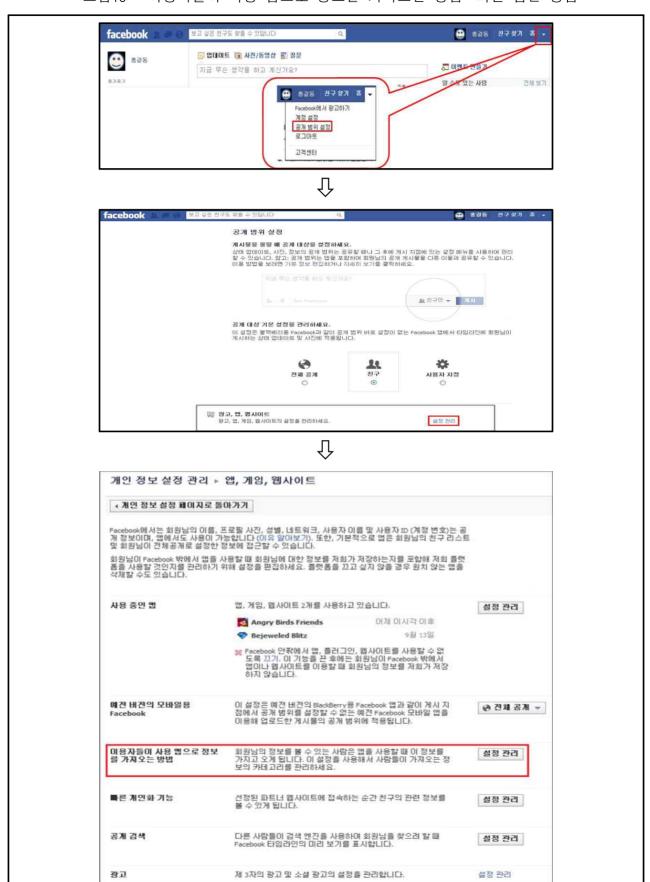
2011년 11월 경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는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었다.25)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화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림 10>과 같이 페이스북 서비스 우측 상단의 "공개 범위 설정" → "광고, 앱, 웹 사이트"의 "설정 관리" →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의 "설정 관리" 버튼을 눌러서 접근할수 있었다.

²⁴⁾ 피심인은 2019년 7월 19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어떤 항목이 기본 설정으로 체크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나, FTC는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종교관과 정치 성향(Religious and political views)" 및 "관심 있는 성별(Interested in)" 항목 외 모든 항목이 체크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매우 적은 비율의 페이스북 이용자만 기본 설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매우 적은 비율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2012년 8월에서 2015년 4월 사이에 플랫폼 설정을 비활성화 한 것을 확인함(FTC Complaint)

^{25) &}quot;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설정 메뉴는 시기에 따라 "친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었음

<그림10>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화면 접근 방법



피심인은 <그림8>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화면에서 "Facebook에서 회원님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앱 사용 시에도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풍부한 소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이 설정을 사용해서 앱, 게임, 웹사이트 이용 시에 공유 가능한 정보를 관리하세요."라고 안내26) 하였으나, 제3자 앱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그림9>의 "앱, 플러그인, 웹 사이트 끔" 도구에서도 "친구들이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님과 교류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을 뿐, 사용하지 않는 제3자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플랫폼" 설정을 비활성화 하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심인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림8>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화면에 접근하여 각 항목의 체크표시를 해제하지 않거나, <그림9>의 "앱, 플러그인, 웹 사이트 끔" 도구에서 "플랫폼" 설정을 비활성화 하지 않으면,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제3자 앱에 해당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하였다.

이용자가 이와 관련된 페이스북의 기본 설정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자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고, 인지하더라도 페이스북 서비스 우측 상단의 "공개 범위 설정" → "광고, 앱, 웹 사이트"의 "설정 관리" →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또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의 "설정 관리" 버튼을 눌러서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또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이라는 화면에서 각 항목에 체크된 체크표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특히 <그림7>에서 개인정보 및 게시물 등의 공개 범위를 "친구만"으로 설정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제3자 앱에 해당 개인정보 및 게시물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27)

²⁶⁾ 페이스북 서비스가 제공되던 시기에 따라 안내하는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음

²⁷⁾ FTC는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및 비공개 게시물 등을 Friends와 공유하면 피심인은 해당 개인정보 및 게시물을 Friends의 제3자 개발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6) 피심인의 주장 및 사실관계

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피심인이 '제3자 앱 사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개인정보'를 Life 앱을 운영하는 GSR을 포함한 제3자 앱 개발자에게 제공하면서 '제3자 앱 사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동의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가) 페이스북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용 약관 및 데이터 정책에 동의해야 되고, 나) 페이스북 서비스 내에 공개범위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 페이스북 뉴스룸 등 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라) 기타 서비스에서 앱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통해 Graph API V1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모든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이용한 제3자 앱과 본인의데이터를 공유한다는 점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가) 이용 약관 및 데이터 정책에 대한 동의

피심인은 Graph API V1을 사용한 제3자 앱으로의 개인정보의 제공은 페이스북의 이용 약관 및 데이터 정책을 통해 이용자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Graph API V1이 운영된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 가입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이라고 지칭된 페이스북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데이터 정책을 읽었음에 동의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용자는 가입하기 버튼 바로 위에 표시된 하이퍼링크를 통해 이 문서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가입을 위해서 이용자는 "가입하기"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데이터 정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이는 아래의 2013년 11월 당시 스크린샷 예시인 <그림1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Sign Up It's free and always will be. ※ 화살표 부분의 내용: First Name Last Name Your Email By clicking Sign Up, you agree Re-enter Email to our Terms and that you have New Password read our Data Use Policy, Month: \$ Day: \$ Year: \$ Why do I r including our Cookie Use. Female O Male y clicking Sign Up, you agree to our Tern lata Use Policy, including our Cookie Use. Sign Up

<그림11> 피심인이 제출한 스크린샷

피심인은 2013년 11월부터 Graph API V1 이용이 종료된 시점까지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 회원님이 Facebook에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와 정보의 소유권은 회원님에게 있으며, 공개 범위 및 앱 설정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앱을 사용하면 앱에서 다른 사람이 공유한 콘텐츠 및 정보뿐 아니라 회원님의 콘텐츠 및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앱과 회원님의 계약은 앱이 해당 콘텐츠나 정보를 이용, 저장, 전송하는 방법에 적용됩니다.

피심인은 2011년 9월부터 Graph API V1 이용 종료 시까지 적용되었던 데이터 정책 역시 이용자에게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용자의 정보를 친구들이 사용하는 앱과 공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에게 친구들이 본인의 데이터를 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공유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지를 통제할 수 있는 설정기능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11월 당시의 데이터 정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회원님이 정보를 공유한 상대방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유 대상을 제어하기: 이메일 혹은 다른 웹 기능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정보는 타인에 의해 재공유가 가능합니다. 즉, 페이스북으로 공유한 정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다른 이용자에 의해 이들이 사용하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등 타인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친구 및 자신이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들은 많은 경우 회원님의 정보를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함으로써 해당 애플리케이션상에서 보다 맞춤화되고 사회적인 경험을 즐기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의 친구 중에는 자신의 친구들은 어떤 음악을 듣는지알 수 있는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혜택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 해당 친구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여러분의이용자 ID를 포함된 친구 목록을 제공하여, 친구 중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있는 친구들이 누구인지 애플리케이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회원님의 친구는 또한 회원님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음악을 공유하고 싶을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회원님이 공개하면, 다른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해당애플리케이션도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님이 좋아하는 것에대한 공개 범위를 친구로만 제한하여 설정한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공유받은 회원님의 친구에게 공유를 위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정보는 대부분 "광고,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설정 페이지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제3자 앱이 이용자에게 접근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 해당 앱이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앱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자가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2013년 11월 당시의 데이터 정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할 정보 제어하기: 회원님이 게임, 애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에 연결하면 ... 저희는 해당 게임, 애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총칭하여 "애플리케이션" 혹은 "앱")에 이용자 ID 및 공개 정보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기본 정보("공개 프로필")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공되는 회원님의 기본 정보에는 회원님 친구들의 이용자 ID (친구 목록)도 포함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회원님의 친구 목록을 이용하여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님의 친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이 보다 사회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회원님의 이용자 ID를 이용하여 회원님의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하고, 회원님의 공개 정보 및 친구 리스트를 포함한 기본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보다 맞춤화된 경험을 회원님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되는 정보에는 회원님이 공개하기로 선택한 정보와 항상 공개된 상태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추가적 정보(예를 들면 회원님의 스토리, 사진 등)가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회원님에게 별도의 구체적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앱(Apps you use)" 설정을 통해 회원님이 사용하는 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의 승인 현황, 애플리케이션이 회원님의 정보에 가장 최근에 접근했던 시점, 애플리케이션이 회원님을 대신하여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고 있는 타임라인 스토리 및 활동의 공유대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필요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거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나) 페이스북 서비스의 공개범위 설정

피심인은 이용자는 공개범위 설정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림12> "플랫폼 옵트 아웃 설정" 화면을 제출하였다.

<그림12> 플랫폼 옵트 아웃 설정 화면

On not share any information about me through the Facebook API

피심인은 이용자가 "플랫폼 옵트 아웃" 설정을 활성화 하는 경우 본인의 정보에 대한 친구들의 접근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제3자 앱 개발자들에게는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9년 12월경부터는 이용자가 플랫폼 옵트 아웃 설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Apps Others Use) 설정을 사용하여친구들이 앱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면서 <그림13> 화면을 제출하였다.

<그림13>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 화면



위원회는 2019년 6월 20일 피심인에 대하여 "Do not share any information about me through the Facebook API"의 기본 설정과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기본 설정에 대한 자료와 해당 화면들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에 대하여 Graph API V1이 운영된 당시 기준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캡처화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심인은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기본 설정은 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터페이스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처음 가입할 때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항목이 위와 같이 기본 설정으로 체크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위원회가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영문 버전의 기본설정이 '관심 있는 성별', '종교관과 정치 성향'을 제외하고는 활성화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자²⁸) 피심인은 2020년 2월 24일 "폐사가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해당 설정의 한국어 버전은 영문 버전의 번역본이었고, 한국어 버전의 설정은 영문 버전의 설정과 일치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심인은 "앱 설정 페이지는 이용자 화면의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화면의 좌측에는 이용자가 앱 설정 페이지를 포함하여 여러 다른 종류의 설정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었으며, 「Apps others use」라는 제목의 페이지 섹션을 확장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친구들이 앱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항목별로 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그림14> 화면을 제출하였다.

facebook Elske Barnes Home & 0 Search for people, places and things o[©] General App Settings 8 Security On Facebook, your name, profile picture, cover photo, gender, networks, wername and user at ave always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to ages (Learn Why). Remember: When you let an app access your public profile, it may also access other information you choose in make public Privacy Timeline and Tagging Use apps, plugers, games and websites on Blocking Apps you use Edt Facebook and elsewhere? Notifications FiRide Friends Edit # Mobile Mobile Followers pickie **Villends** Edit X (D) Apps finstagram Only Me Edit # Ads Payments R Roku Only Me Edit 1 ∰ Cifts Brewster Only Me. Edit v Support Dashboard Foursquare Only Me Edit X Spatify Circly Me Edit 4 @ Pinterest Only Me Edit = 7 Rdio Only Me Edit × **Flipboard** Only Me Edit v Show All Apps (12) + Apps others use People who can see your info can tring it with Edt

<그림14>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 화면 접근 경로

²⁸⁾ FTC Complaint 59.~61.항목

다) 페이스북 뉴스룸 등 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메시지 전달

피심인은 페이스북 뉴스룸에 포스팅된 자료 중 2013년 8월 「Facebook 로그인 기능 업데이트²⁹」, 2014년 4월 「익명 로그인 기능 도입과 Facebook 로그인 기능 업데이트³⁰」와 「f8s(페이스북 개발자 회의)에서의 기조연설」 및 페이스북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2013년 6월 「Graph API와 함께 시작하기³¹)」 및 10월 「Facebook 로그인 -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³²)」 동영상 등 공개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이용자와 제3자 앱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이 2018년 9월 28일 답변한 이 자료들은 모두 영어로만 제공되었고, 피심인은 2014년 5월 27일부터 페이스북 뉴스룸이 한국어로도 운영되었다고 답변 하였다.

라) 서비스에서 이용자와 앱의 상호작용

피심인은 Graph API V1을 사용한 제3자 앱은 세분화된 데이터 허가 (Granular Data Permission)를 통해 접근하려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설명한 다음, 해당 앱을 설치하는 이용자가 제공하기로 선택한 정보에만 접근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제3자 앱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경험하는 정보 흐름은 "1. 이용자의 화면에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승인 화면이 표시되고, 2. 이용자가 인증되면, 해당 앱은 ①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데이터 중 특정 범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고, ②이용자의 친구에 대한 특정 범주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용자에게 요청하며(물론, 앱은 해당 친구가 공개범위 컨트롤을 통해 설정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③이용자를 대신하여 컨텐츠를 "작성" 혹은 게시할 권한의 승인을 요청합니다."라고 설명하였다.

피심인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특정 데이터 범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모바일 화면 예시인 <그림15>를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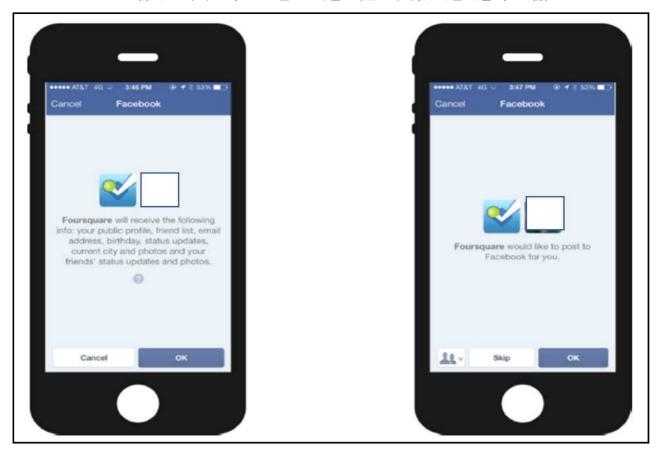
²⁹⁾ https://newsroom.fb.com/news/2013/08/updates-to-facebook-login/

³⁰⁾ https://newsroom.fb.com/news/2014/04/f8-introducing-anonymous-login-and-an-updated-facebook-login/

³¹⁾ https://www.youtube.com/watch?v=WteK95AppF4

³²⁾ https://www.youtube.com/watch?v=aMsXqv7HcsM

<그림15> 페이스북 로그인 모바일 화면 예시(2013년 2분기 도입)



그러나 피심인은 제3자 앱을 설치하려는 이용자가 아닌 페이스북 친구에게는 <그림15>와 앞서 확인한 <그림1> 화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요청을 한사실은 없다.

나. 이용자 비밀번호 평문 저장

피심인은 2019년 3월 21일 페이스북 뉴스룸(newsroom.fb.com)을 통해 "2019년 1월 정기 보안검토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내부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읽을 수 있는 형식(평문)으로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대한민국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2019년 3월 25일 피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17일 피심인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내부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보관된 전체 이용자와 대한민국 이용자는 각 서비스별로 아래와 같다고 확인하였다.

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체 이용자	약 6억 9,700만명	약 500만명
대한민국 이용자	약 81만명	약 8,200명

피심인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보관된 원인으로 접속성이 낮은 이용자를 위한 Facebook Lite 앱의 경우 클라이언트 코드(client code)가 실제기기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서비스의 핵심 서버와 통신하는 Facebook Lite 서버에서 작동되었는데, 경우에 따라 페이스북 서비스의 핵심 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새니티제이션 프레임워크"33)」 및 탐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Facebook Lite 서버에 비밀번호가 기록됨으로써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보관 되었다고확인하였다.

또한 평문 비밀번호가 새니티제이션 프레임워크를 갖춘 일부 시스템에 기록되었으나 프레임워크가 이를 탐지하지 못하였고, 피심인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션 쿠키(session cookie)의 일부로 평문 비밀번호를 수집하였으나, 의도한 사용이 완료된 후 해당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아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보관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내부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평문으로 기록된 이용자의 비밀번호 대부분은 2018년 11월 코드 변경과 2018년 12월에 이루어진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동화된 비밀번호 탐지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수동 검토를 진행한 결과, 대한민국 이용자의 평문 비밀번호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사례는 2016년으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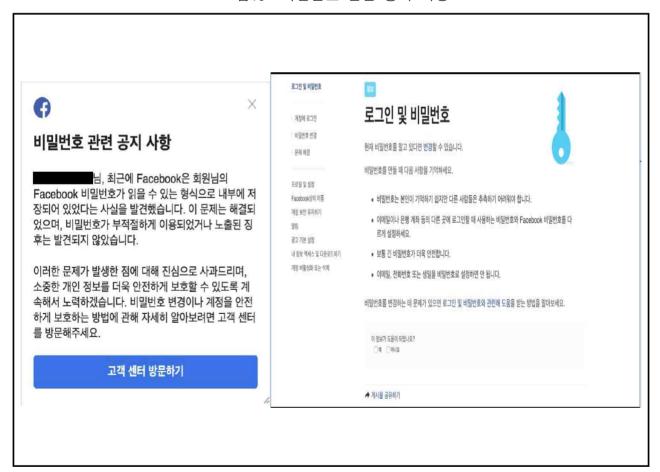
피심인은 2019년 1월과 2월에 발생한 Facebook Lite 문제로 인하여 로그에 기록된 비밀번호를 삭제하였고, 2019년 3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된 다른 모든 평문 비밀번호의 삭제를 완료하였다고 소명하였다.

³³⁾ 비밀번호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를 데이터가 기록되기 전에 확인하여 식별될 수 없는 값으로 대체하는 일련의 코드

또한 피심인은 사건을 인지한 후 Facebook Lite 문제로 발생한 평문 비밀번호 기록을 중단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평문 비밀번호 기록 사례들을 처리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평문 비밀번호 기록을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개선조치로 평문 비밀번호 탐지 능력을 개선시키고, Facebook Lite에 새니티 제이션 프레임워크를 배치하여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시스템상에 의도하지 않게 기록되는 평문 비밀번호 사례들을 찾아내는 데이터 탐지 도구를 업그레이드하여 비밀번호가 로그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감한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코드를 탐지하는 도구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새로운 코드가 작동하는 툴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피심인은 2019년 4월 2일 대한한국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시작하였고, 그 예시로 <그림 16>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16> 비밀번호 관련 공지 사항



다.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미통지

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조사하면서 대한민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 이용내역 통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피심인이 예측한 대한민국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 수는 1,800만 명으로 2019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2017년 매출액은 미화 400억 달러로 한화 1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페이스북社는 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하는 의무 사업자이다. 피심인이 페이스북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연락처 정보로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심인에게 요청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폐사의 서비스약관 및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수집·이용 및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이터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를 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그림17>을 예시로제출하였다.



<그림17>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관련 스크린샷(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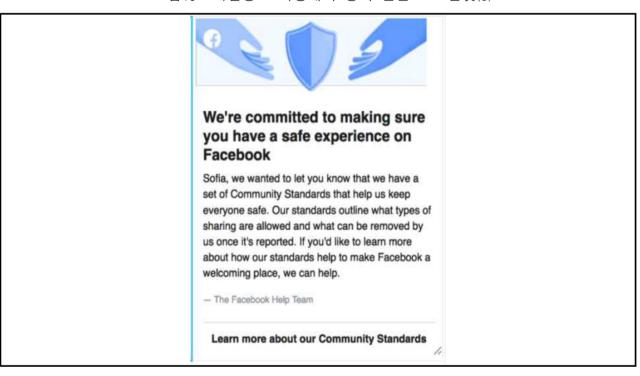
또한 "지난 12개월 안에 종합적인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경험(Global Privacy Experience, 이하 "GPE") 도입의 일부로서 이용자는 폐사의 데이터 정책 및 이용약관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이메일과 (활용 가능한 경우)무료 SMS를통해 통지(2018. 6. 15. 통지절차 완료 / 2018. 7. 14. 시행)하였다"고 답변하면서,이용자는 <그림18>과 같은 유사한 통지를 받았다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18>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관련 스크린샷(2)



피심인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인 공개범위 통제장치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페이스북은 통제장치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주기적으로 맞춤화된 제품 내 교육 팁(tips)을 이용자에게 전송하여 이용자에게 계정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에서부터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팁은 이용자의 뉴스피드 상단 및/또는 다양한 플랫폼과 장치의 뉴스피드 중간에 나타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개별 팁은 1년에 한 번에서 최대 세 번까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사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년에 두 번 아래와 같은 팁을 표시하였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그림19>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19>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관련 스크린샷(3)



또한 피심인은 "특히 개인정보에 관하여, 페이스북의 '공개범위 확인(Privacy Check Up)'은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페이스북의 사람들 및 로그인을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다른 회사의 앱과 웹사이트와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4년, 페이스북은 새롭게 확장된 공개범위확인 기능을 도입하였고, 이는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사람,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 및 프로필의 주요 정보에 관한 공개범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본인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도구와 추가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지난 12개월의기간 중 페이스북이 보낸 가장 최신의 공개범위 확인 알림은 2018년 5월에 보낸 것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AYI 도구, 이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 및 이용자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2019년 초부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추가적인 팁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메일 및 무료 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한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심인의 담당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알리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라.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국내외 언론에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한 논란으로 이슈가 된 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 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페이스북의 대한민국 매출액 및 제3자에게 제공된 친구 수 규모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자 제공 중단시점 및 기본설정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1) 자료 미제출

가) 페이스북 서비스의 대한민국 매출액 관련 자료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2018년 4월 20일 페이스북 서비스의 대한민국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심인은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원회는 2018년 8월 3일 재차 피심인에게 페이스북 서비스의 대한민국 매출액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고, 피심인은 2018년 9월 28일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출액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므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9년 5월 23일 피심인의 담당자가 위원회 조사에 출석해서도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만 답변하였다.

위원회는 2019년 6월 20일 다시 한 번 피심인에게 페이스북 서비스의 대한민국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고, 피심인은 2019년 7월 19일 납세국이 대한민국인 광고주에 의해 피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 추정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2019년 11월 27일 납세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광고주가 대한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심인은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이용자 기반 또는 이용자 활동에 근거하여 매출을 기록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세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광고주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과 8월 30일에 피심인에게 2015년에서 2017년 까지의 광고매출액에서 페이스북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광고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심인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광고매출액은 페이스북 및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고매출액을 포함하고, 광고 매출액을 서비스나 제품별로 별도로 기록하거나 신고하고 있지 않아앱 또는 서비스별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광고 매출액의 세부 내역을 제공할수 없다고 하면서 Instagram 등 페이스북 이외의 서비스 광고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원회의 매출관련 자료요구 및 피심인의 답변>

위원회 요구	피심인 답변 및 사유
• ('18.4.20.) 대한민국 매출액	• 미제 출
• ('18.8.3.) 관련자료 재요구	• 미제출('18.9.28.) : 한국 발생 매출액 별도 미산정, 가능한 매출액 정보 취합 중, 추가 시간 필요
• ('19.5.23.) - 한국 방문 조사시 재요구	• 피조사 담당자 답변 ('19.5.23.) -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 준비 중
• ('19.6.20.) 관련자료 재요구	• 불완전 자료 제출('19.7.19) : 납세국이 대한민국인 광고주에 의한 페이스북 광고 매출액 추정치 * 인스타그램 등 페이스북 이외의 서비스 매출 포함
('19.11.27.) 보완 요구납세국이 한국 아닌 광고주의 한국 이용자 대상 광고 매출액	• 미제출 사유 - 특정 시장 이용자 또는 이용자 활동에 근거한 매출을 기록하거나 추적하지 않음
 ('20.6.30.) & ('20.8.30.) 요구 '15~'17년 광고 매출액에서 인스타그램등 페이스북 이외의 서비스를 제외한 광고매출액 	• 미제출 : 페이스북과 다른 서비스의 광고 매출액 포함, 제품별 광고 매출액을 별도 기록하거나 신고 하고 있지 않아 앱 또는 서비스별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광고 매출액 세부내역을 제공할 수 없음

나) 제3자 개발자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 관련 자료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2018년 4월 20일과 8월 3일, 그리고 2019년 6월 20일, 2020년 1월 13일에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Graph API V1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3자앱, "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을 사용한 대한민국앱, ㈜ 가개발한앱, "Whitelisted Developers"가개발한제3자앱을 설치한이용자및해당제3자개발자에게개인정보가제공된페이스북친구의규모등과관련된자료를제출하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0년 2월 24일이 되어서야 "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을 사용한 대한민국 앱 10,272개와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제3자 앱의 목록 및 이를 사용한 대한민국 이용자의 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3자 개발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 등과 관련된 자료는 2018년 9월 28일 "페이스북은 개별 이용자들이 Graph API V1을 이용한 제3자 앱을 설치한 일자 및/또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Graph API V1을 이용하여 개발된 제3자 앱을 설치한 결과 해당 앱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친구의 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해당 제3자 앱을 설치했을 당시 누가 해당 이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였는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이 해당 시점의 이용자의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당시 각 친구들의 공개범위 컨트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용한 제3자 앱이 해당 친구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각 친구들의 공개범위 설정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2019년 5월 23일 피심인의 담당자에게 특정 앱을 지정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았고, 피심인의 담당자가 Life 앱과 같은 방법 으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9년 6월 20일 ㈜ 에서 개발한 제3자 앱 중 "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이 있는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수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심인은 2019년 7월 19일 ㈜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답변 외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0년 2월 24일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원회의 매출관련 자료요구 및 피심인의 대응>

위원회 요구	피심인 대응 및 사유
 ('18.4.20.), ('18.8.3.), ('19.6.20.), ('20.1.13.) Graph API v1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3자 앱, "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을 사용한 대한민국 앱, ㈜ 가 개발한 앱,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제3자 앱을 설치한 이용자 및 해당 제3자 앱에 개인 정보가 제공된 친구 규모 등 	 ('20.2.24.) 최초 요구로부터 약 22개월 만에 일부자료 제출 "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을 사용한 대한민국 앱 10,272개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제3자앱 목록 및 대한민국 이용자 수
• ('19.5.23.) 한국방문 조사시 질문	• ('19.5.23.) 피조사 담당자 답변
- 특정 앱 지정 시 해당자료 제출 가능 여부 • ('19.6.20.) ㈜ 에서 개발한 제3자 앱 중 "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이	- Life 앱과 같은 방법으로 수치 제공 가능 • ('19.7.19.) ㈜ 에 하여 관련자료 제출 곤란
있는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친구의 수	• ('20.2.24.) 시간부족으로 제출 어려움

2) 거짓자료 제출

가) 제3자 개발자에게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 관련 자료

피심인은 2015년 4월 30일 이후에는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Graph API V1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또한 2018년 5월 22일 제출한 자료에서 "Graph API V2의 경우, 앱이 이용자의 친구에 관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해당 앱을 사용하는 친구 명단으로 제한 하였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8년 9월 28일 제출한 자료에서 "Graph API V2의 도입을 통해 플랫폼의 변신과 함께 앱 관련 정책 집행을 강화하였습니다. Graph API V2의 경우, 제3자 앱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기본 프로필 정보(즉, 공개 프로필, 이메일 주소 및 친구 리스트)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자 친구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Whitelisted Developers」는 피심인로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피심인에게 「Whitelisted Developers」 및 공식적으로 Graph API V1 사용이 종료된 2015년 4월 30일 이후에도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앱의 전체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0년 2월 24일에 「Whitelisted Developers」 및 2015년 4월 30일 이후에도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앱 68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기본 설정 관련 자료

피심인은 2019년 7월 19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페이지의 기본 설정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폐사의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터페이스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처음 가입할 때「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에 항목이 위와 같이 기본설정으로 체크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영어로 제공한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기본 설정은 "Interested in", "Religious and political views" 이외의 모든 값이 체크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였고, 피심인에게 한국어로 제공한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해 영어로 제공한 페이스북 서비스와 다르게 설정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고, 다르다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2020년 2월 24일에 "폐사가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해당 설정의 한국어 버전은 영문 버전의 번역본이었고, 한국어 버전의 설정은 영문 버전의 설정과 일치하였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기타, 자료의 지연 제출 및 성실한 조사협조 촉구

피심인은 2019년 4월 5일 미팅에서 2019년 5월 23일 위원회의 조사에 출석하기 전까지 제출키로 한 Cambridge Analytica 사안에 관한 페이스북의 소명계획(안)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다가 출석 조사 마지막 날인 2019년 5월 24일 오후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해당 문서에는 "2019년 5월 23일 및 24일 서울에서 귀 위원회와의 미팅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페이스북은 미팅에 앞서, 4월 5일 귀 위원회와의 미팅에서 폐사에 문의하신 질의사항을 포함하여 귀 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에관해 말씀 드려"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2018년 4월 20일과 8월 3일, 2019년 6월 20일과 11월 27일, 2020년 1월 13일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제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위원회는 피심인의 반복적인 자료제출 기한 연장행위, 중요한 자료요구에 대해 명확한 사유 없이 답변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2019년 11월 27일과 2020년 2월 12일에 피심인에게 사실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촉구하는 문서를 보낸사실이 있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법령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정한 4가지 법정 고지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1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제2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3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제4호)」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제1호)」,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제2호)」,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제3호)」,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제5호)」 등 5가지 방법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의 내용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 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2) 관련 법리

정보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¾(2012.9.)」 (이하 '해설서')

해설서의 내용 중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규정의 취지를 설명한 바에 따르면, 사업자가 업무 제휴,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볼 때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고 이용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위험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제공 여부를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조치사항으로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받을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4가지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①누구에게, ② 어떤 이유로, ③ 무엇을 제공하였고, ④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는 지를 이용자에게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경우에도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동의를 얻는 방법의 주의사항으로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므로,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문을 게재하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³⁴⁾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음.

나)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관 및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35)」(이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 고지사항만 알기 쉽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이용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약관 동의 등을 포괄적 으로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전체를 고지하거나 보유·이용 기간을 단순히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와 같이 불명확하게 고지해 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파기 사유 발생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법정고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장황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관 및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8.9.)」

- ◆ 법정 고지사항만을 간결하게 고지하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용어를 사용 하도록 하며, 중요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사업자가 회원가입 단계에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구매 또는 결제 단계에 제공받는 제3자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을 포괄적으로 받지 않도록 함
- ◆ '법정 고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장황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전체를 고지하거나 보유·이용 기간을 단순히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와 같이 불명확하게 고지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파기 사유 발생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법정고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장황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함

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36」(이하 '보호지침')

보호지침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구. 행정안전부 고시)로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지침이 적용된다.

³⁵⁾ 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은.

^{36) 2011.9.30.}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의가 바뀐 적이 없고,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서 동 내용을 그대로 규정·적용하고 있음

보호지침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지침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가 물리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고, 접근권한 부여 등 제3자가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행위 사실의 개요

피심인은 2007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인 「Graph API V1」을 도입·운영하면서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소셜로그인을 통해 제3자 앱에 가입할 때 가입 당사자인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같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심인은 페이스북 친구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제3자 앱 개발자는 피심인이 보유한 페이스북 친구의 프로필, 학력·경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심인은 2015년 4월 30일 Graph API V1을 대체하여 두 번째 버전인 Graph API V2를 출시하였다. 새로 출시된 Graph API V2는 제3자 앱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페이스북 이용자가 가입하려는 제3자 앱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로 제한'하여 Graph API V1에서 일어난 바와 같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Graph API V1의 운영이 공식 종료된 이후에도 68개의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제3자 앱에는 2018년 6월까지 Graph API V1을 통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계속 허용 하였다.

위원회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18년까지 최소 330만 명의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행위사실의 세부 내용

피심인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등을 통해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제3자 앱에 같이 제공되도록 하면서 해당 정보주체인 페이스북 친구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는 피심인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이 페이스북 서비스에 이용자가 가입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화면은 <그림20> 및 <그림21>과 같이 확인된다.



<그림20> 페이스북 서비스 가입 화면

<그림21> 페이스북 서비스 가입 화면(2011.3.~)



피심인은 이용자의 페이스북 서비스 가입 과정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전에는 <그림20>에서 성별을 선택하는 체크박스 아래에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쿠키 사용을 포함한 데이터 사용 정책을 숙지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문구를 보여주고 "이용약관", "쿠키 사용", "데이터 사용 정책"을 클릭하는 경우 팝업을 통해 각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후 가입하기를 누르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화면을 통해서 이용자의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피심인은 2011년 3월부터는 <그림20>에서 성명, 이메일,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21> 화면과 같이 폰트크기16인 한글 기준으로 120글자가 들어가는 네모박스 안에 당시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과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 전문을 게시한 후 "I agree to Facebook's Privacy Policy" 및 "I agree to Facebook's Terms of Service"에 체크한 후 가입하기를 누르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제3자와 공유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친구가 접속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사이트는 회원님의 이름, 프로필 사진, 성별, 사용자 ID, 회원님이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사이트가회원님의 기타 콘텐츠나 정보(회원님의 친구 목록 포함)에 접근하려면 회원님의 친구로부터 구체적인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링크로 공개해 놓은 것과 <그림21> 화면의 네모박스 안에 이런 내용을 게시하고 "I agree to Facebook's Privacy Policy"에 체크한 후 가입하기를 누르도록 한 것이 제3자 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을 게재하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할 것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사업자가 회원가입 단계에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구매 또는 결제단계에 제공받는 제3자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을 포괄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안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용자에게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 이용 약관에 동의하며 쿠키 사용을 포함한 데이터 사용 정책을 숙지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문구를 보여주고 가입하기를 누르도록 한 것과 작은 네모박스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을 게재하고 "I agree to Facebook's Privacy Policy"에 체크한 후 가입하기를 누르도록 한 것은 위원회가 발간한 해설서 및 가이드에서 설명·안내하고 있듯이 명시적인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 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법정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인식 아래 행해질 수 있도록 그 실행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37)

³⁷⁾ 대법원 2016.6.28. 선고 2014두2638 판결

그러나, 피심인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제3자 앱이 페이스북 친구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 성별, 사용자 ID,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타 콘텐츠나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앱 사용자로부터만 동의를 받는다."고 공개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개발자, 제3자 개발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3자 개발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제3자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3자 앱에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제3자 앱을 사용하려는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제3자 앱이 요구하는 권한에 대한 <그림22> '허가 요청' 화면을 보여주고 '허가 하기'를 누르도록 하였고, '내 친구들의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제3자 앱은 해당 페이스북이용자가 '허가 하기'를 누르면 제3자 앱 사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친구의 개인정보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f 허가 요청 RockMelt 이윤리케이션이 다음 항목에 대해 허가를 요청합니다. 내 기본 정보에 접근 이용, 프로벌 사진, 성열, 네트워크, 사용지 ID, 친구 왕목과 "모은 사람에게 공개"로 설정된 모든 경보를 되었었니다. 이메일 수신 로 작전 메일을 보낼 수 RodMelt0I(기) 있도록 하락합니다. - 변경 당벼락에 게시 ReddMet 어떻리케이션이 상태 메시지, 노트, 사진, 동영상등 내 당여학에 계시할 수 있습니다 내 뉴스피드의 게시물에 접근 나내 정보에 항상 접근 Roddfelt은(는)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을 해예도 내 정보에 결 근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채팅에 접속 Access my custom friend lists 내 프로팔 정보에 접근 할마하는 것, 들었, TV, 정회, 책, 인용구, 그룹, 노트, 생년철 왕, 거주지 및 Facebook 항의 상태 👤 🕳 온라인 접속여부 내 사진과 동영상에 접근 👥 내 친구들의 정보에 접근 는 것, 용약, TV, 영화, 바, 만용구, 온라인 집으며 , 동영상, 이동이 나온 사진과 동영상 및 1 상태 님으로 로그인(본인이 아닌가요?) 하가하기 하가 안함

<그림22> 제3자 앱의 허가 요청 화면

피심인은 모든 제3자 앱의 '허가 요청' 화면에 '내 기본 정보에 접근'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앱 사용자의 이름, 프로필 사진, 성별, 네트워크, 사용자 ID, 친구 목록, '모든 사람에게 공개'로 설정된 모든 정보 등을 제3자 개발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자 앱이 '내 기본 정보에 접근' 항목 외에 '내 친구들의 정보에 접근' 항목 등 추가적인 항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없이 해당항목을 '허가 요청' 화면에 포함하였다.

피심인은 제3자 앱을 사용하려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제3자 앱의 '허가 요청' 화면에서 '허가 하기'를 누르는 경우 제3자 앱이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도록 하면서도 페이스북 친구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특히,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프로필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게시물 등을 작성할 때 화면에 바로 표시되는 공개 범위 설정 화면인 <그림23>에서 개인정보 및 게시물 등의 공개 범위를 "친구만"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피심인은 해당 정보가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 친구만

 ♪ 한구만

 ♪ 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

 나만 보기

 ★ 사용자 지정

 ☑ 찬한 친구

 집 가족

 전체 리스트 보기...

<그림23> 개인정보 및 게시물 등의 공개 범위 설정 화면

피심인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 친구에게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보여주는 화면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심인의 담당자는 이용약관 및 데이터정책 외에는 페이스북 친구의 동의 여부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화면은 없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페이스북 친구는 페이스북 서비스 가입 과정 및 제3자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제3자 개발자가 누구인지,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목적은 무엇인지,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유·이용되는지는 물론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할 수 없었다.

나)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용자가 제3자 앱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할 정보 제어하기' 등이 명시된 데이터 정책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그림23>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의 기본 설정 상태를 "관심 있는 성별", "종교관과 정치 성향" 항목 이외의 모든 항목이 체크된 상태로 화면을 제공하여 해당 개인 정보가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그림23>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설정 화면

Facebook에서 회원님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앱 사용 시에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풍부한 소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설정을 사용 ______ 해서 앱, 게임, 웹사이트 이용 시에 공유 가능한 정보를 관리하세요. ☑ 소개 □ 내 타임라인 게시물 ☑ 생일 ☑ 출신지 ☑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 거주지 ☑ 학력 및 경력 □ 관심 있는 성별 □ 종교관과 정치 성향 ☑ 활동, 관심사, 좋아하는 것 ✔ 내웨사이트 ₩ 내 애 화도 ☑ 내가 온라인인 경우 앱과 웹사이트가 다른 정보 카테고리(친구 리스트, 성별, 전체 공개 정보 등)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모든 플랫폼 앱을 끄면 됩니다. 앱을 끄면 게임과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장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용자는 페이스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어를 통해 기본 설정 상태를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플 랫폼에 구현된 기술적 장치들을 사용하여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공유할지 결정 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이고, 이용자 데이터가 앱과 공유될 수 있는 상황 및 이와 같은 데이터 공유를 조정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어 방법의 존재 및 특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투명성이 항상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이와 관련된 페이스북의 기본 설정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자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고, 인지하더라도 페이스북 서비스 우측 상단의 '공개 범위 설정' → '광고, 앱, 웹 사이트'의 '설정 관리' →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또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의 '설정 관리' 버튼을 눌러서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또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이라는 화면의 각 항목에 체크된 체크표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제3자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 3자 개발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의 기본 설정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접근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가 제3자 개발자에 제공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페이스북은 단순한 데이터 중개자로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피심인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은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단순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제3자앱에 이용자 자신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들이 공유한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으로서, 이용자 주도하에 데이터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제3자 앱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이 개발·공개한 Graph API V1이 매개체가 되어 제3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이용자 및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3자 앱에 제공된 것으로서, 정보의 흐름으로 볼 때 피심인이 수집하여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피심인으로 부터 Graph API V1 사용을 허락받은 제3자 앱에 제공 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따른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피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제3자 앱 사용자가 해당 제3자 앱을 사용하지도 않는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림23>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화면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정보가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특히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스북 친구에게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38)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제3자 앱 사용자의 정당한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페이스북 친구의 동의 없이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제3자 앱'을 사용하려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제3자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런 결과로 제3자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피심인 조차도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어느 제3자 개발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다.

라) 친구의 정보는 이용자(Users) 정보의 일부라는 피심인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은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는 이용자(Users) 정보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 했으므로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페이스북 이용자가 제3자 앱에 가입할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제3자 앱에 제공되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는 이용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순한 관계정보에 그치지 않으며, 제3자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이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친구의 프로필 정보와생일,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학력과 경력, 활동, 관심사, 좋아하는 것, 거주지, 출신지 내 앱 활동, 내 타임라인 게시물 등 거의 모든 항목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딸린 정보의 일부로 볼 수 없고, 별도의 독립된 정보주체인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마)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기간 및 규모에 대하여

³⁸⁾ 정보통신망법 제23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피심인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GSR이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운영한 Life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대한민국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85,709명으로 추산하였으나, 그 외의 제3자 앱에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수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피심인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 개발자의 제3자앱 10,272개의 대한민국 사용자 수가 중복을 포함하여 25,461,468명 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위반행위 기간에 대해서도 2015년 이후에는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Graph API V1의 운영이 공식 종료된 2015년 5월 이후는 위반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 규모에 대해 살펴본다.

피심인이 산정하여 제출한 GSR의 Life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대한민국 페이스북 친구의 수는 85,709명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고, 앞서 기초사실[Ⅲ. 2. 가. 4) 나)]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앱에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는 3,251,500명이 다.

Life 앱과 앱의 경우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서버에 저장하여 페이스북, Life 앱 및 앱의 서비스와 무관한 목적으로 분석·활용되는 등 오·남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반행위의 규모가 최소한 두 앱의 페이스북 친구 수를 합친 3,337,209건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만 여개의 제3자 앱에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의 규모는 중복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 1,800만명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피심인이 제3자 앱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는 제출하지 않아 그 수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물리적인 이전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물리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3자 앱에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Graph API V1이 실제로 운영된 기간이 위반행위 기간에 해당한다.

다만, 처분에 있어 가중·감경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기간은 2년이 기준이어서 2년을 초과하는 위반행위 기간은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위반행위가 최초로 확인되는 앱의 출시 시점인 2012년 5월을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한다.

반면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중 하나인 과징금 산정은 위반행위 종료 직전 3개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점이 되는 위반행위 종료 시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피심인이 제출한 "Whitelisted Developers" 관련 자료와 미국 FTC로부터 공유받은 "Whitelisted Developers"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이용자 89,093명이설치한 " "앱의 경우 2018년 6월 12일까지 총 25개 항목39에 달하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Graph API V1을 통해 제공받은 것이 확인되는 등 "Whitelisted Developers" 앱에 한국 이용자인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개발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2018년 6월까지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기간은 앱의 출시 시점인 2012년 5월부터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제3자 앱이 Graph API V1 사용을 중단한 2018년 6월까지이다.

³⁹⁾ friends_website, friends_groups, friends_notes, friends_games_activity, friends_interests, friends_online_presence, friends_birthday, friends_checkins, friends_likes, friends_religion_politics, friends_location, friends_status, friends_questions, friends_photo_video_tags, friends_about_me, friends_work_history, friends_education_history, friends_video, friends_activities, friends_hometown, friends_relationship_details, friends_subscriptions, friends_photos, friends_relationships, friends_events

다. 판단

위 「나. 인정되는 사실」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대한민국 페이스북 친구 약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개발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정보주체인 페이스북 친구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

아울러 페이스북 친구를 포함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및 게시물 등의 공개 범위를 "친구만"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개인정보 및 게시물 등이 제3자 앱에 제공되도록 한 행위 또한 위 내용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관한 행위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1)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관련 법령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관련 법리

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고시인 보호조치 기준에 따르면 비밀번호란 '이용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하는 고유 문자열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로 정의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가 복호화 되지 않게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 6호.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제6조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017.12)」(이하 '기준 해설서')

기준 해설서는 "식별자"를 정보주체 식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ID, 사용자이름, 사용자 계정명 등으로 정의하고,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란 타인이비밀번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본인 이외의 내부직원 또는 비인가자나 공격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비밀번호는 노출 및 도용되는 경우 해당 비밀번호로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등 비밀번호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비밀번호 사용자 외 어느 누구도 비밀번호를 알 수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저장"과 관련하여, 기준 해설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보

조저장매체 등에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 적용)하여 저장해야 하고, 일방향 암호화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이용자 등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평문 형태가 아닌 해쉬 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 값으로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입력한 비밀번호와 시스템에 저장된 비밀번호를 비교하여 인증된 사용자임을 확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외부자는 물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내부자도 어떠한 경우에도 알 수 없도록 해쉬 함수를 적용하여 복호화 되지 않도록 암호화 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심인은 페이스북 이용자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각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2016년부터 피심인의 Facebook Lite 서버 등에 평문으로 보관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이중에는 대한민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81만명의 비밀번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해당 사실을 2019년 1월 정기적인 보안 검토과정 중에 알게 되었고,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보관된 원인이 고의적인 것이 아닌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2019년 3월 말까지 평문으로 보관된 대한민국 페이스북이용자 81만 명의 비밀번호를 삭제하였고,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사실에 대한 피심인의 자발적 대처 및 사후조치 등은 처분 시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내부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보관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제1호 및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3.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관련 법령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지 의무자")는 통지할 수 있는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통지 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정한 바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제3호)'이다.

또한, 통지 방법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해설서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의 취지에 대해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이와 같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사업자 조치 사항으로 부연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운영기준의 기본원칙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정확히 알고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통지하는 수준이 아닌 이용자별로 개인정보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나. 판단

피심인이 예측한 대한민국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 수는 1,800만 명으로 2019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2017년 매출액은 미화 400억 달러로 한화 100억 원 이상에 해당되고, 이용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 사업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2018년 8월 3일 피심인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지한 내역을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특히 피심인의 담당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출석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알리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4.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제1항에 의거, '법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를 인지하게 된 경우(제1호)',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제3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행 수단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제3항은 제22호에서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나. 판단

피심인은 페이스북의 대한민국 매출 및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Cambridge Analytica 사안에 관한 페이스북의 소명계획(안) 관련 자료를 지연제출 하였고, 제3자 개발자에게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자료 및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 페이지의 기본 설정과 관련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1) 일부 자료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 페이스북 서비스의 대한민국 매출액 관련 자료

위원회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대한민국 매출액 관련 자료를 2018년 4월 20일부터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심인은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19일에야 납세국가가 대한민국인 광고주에 의해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 추정치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광고주에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이용자 기반 또는 이용자활동에 근거하여 매출을 기록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세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광고주가 대한민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아울러 피심인이 제출한 전세계 광고매출액에는 Instagram 등 페이스북 서비스 외의 다른 서비스 광고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매출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광고주에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점과 조사가 개시된 이후 약 2년 여에 걸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한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이용자 기반 또는 이용자 활동에 근거하여 매출을 기록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거나 "서비스별로 매출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는 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제3자 개발자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 관련 자료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Graph API V1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3자 앱, "Access my friends information" 권한을 사용한 대한민국 앱, ㈜ 가 개발한 앱, 그리고 "Whitelisted Developers"가 개발한 제3자 앱에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심인은 제3자 앱 사용자가 제3자 앱을 설치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는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제3자 앱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앱에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침해되었을 수 있는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친구)에 관한 자료이다.

Cambridge Analytica가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정치 심리전을 전개 했다는 의혹이 2018년 3월에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4월에 피심인이 전세계의 국가별 Life 앱 사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각 각 산출하여 발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가 특정 제3자 앱을 선정하여 Life 앱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Cambridge Analytica 사안에 관한 페이스북의 소명계획(안) 관련 자료

피심인은 2019년 4월 5일 미팅에서 2019년 5월 23일 위원회의 조사에 출석하기 전까지 제출하기로 한 Cambridge Analytica 사안에 관한 페이스북의 소명계획(안) 자료를 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출석한 이후인 2019년 5월 24일 오후에 제출하였다.

해당 문서의 내용은 2019년 5월 23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원회가 위원회 조사에 출석한 피심인 담당자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⁴⁰⁾

따라서 해당 문서가 2019년 5월 23일 전에 위원회에 제출되었다면, 위원회는 피심인의 담당자에게 해당 문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심인의 담당자에게 해당 문서와 관련된 세부적인 질문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 문서를 2019년 5월 23일 이전에 작성하고도 조사 마지막 날인 2019년 5월 24일 오후에야 제출한 것은 위원회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0) ▶}피심인이 제3자 앱 개발자가 요청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 ▶Graph API 개발과 매출액과의 연관성, ▶잠재적 영향을 받은 한국 내 이용자 규모 추정 방법, ▶GSR에 제공된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등

2) 거짓자료 제출

가) 제3자 개발자에게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 관련 자료

피심인은 당초에는 2015년 4월 30일 이후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Graph API V1 사용을 중단하였다고 자료를 제출(2018.5.22., 9.28)하였다가 위원회가 미국 FTC 자료를 통해 2018년 6월까지 「Whitelisted Developers」가 피심인로부터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다시 자료를 요구하자 처음 관련자료를 요구한 때로부터 20개월 이상 지난 2020년 2월 24일에야 '2015년 4월 30일 이후에도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앱 68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 자료는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결정짓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자료로서, 피심인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에 큰 지장을 초래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대리인)은 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Graph API V1은 공개되는 Public API이고 Whitelisted Developers가개발한 68개 3자앱에 계속 사용토록 제공된 것은 Private API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위원회가 두 개념을 구분한 실익을 묻는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큰 틀은 다르지 않다"고 확인하면서, "위원회가 FTC소장에 언급된 Whitelisted Developers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한 데 대해 그와 관련된 사항을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구분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간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진술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내용으로서 당초 제출된 자료와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는 동안의 기간이 20개월이넘는 점과 위원회가 다른 경로의 자료를 확인한 후에야 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항변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기본 설정 관련 자료

피심인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기본 설정이 "Interested in", "Religious and political views" 외

모든 값이 체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터페이스의 특성으로 인해이용자가 처음 가입할 때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기본 설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영문 버전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자 영문버전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시인한것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위원회는 피심인이 대한민국 매출액 관련 자료 및 제3자 제공 친구 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3자 개발자에게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 관련 자료 및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기본 설정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3항제2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 Facebook Ireland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다. 가·나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피심인 Facebook Ireland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2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 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①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산정, ②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산정, ③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④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 Facebook Ireland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이용자의 월간 이용자 수는 '18년 2분기 기준 1,800만명으로 방대하고, ▲Graph API V1을 도입·운영을 통해 최소 330만명 이상의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하였으므로,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 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①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②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③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① 제3자 앱이 피심인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심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점, ② 제3자 앱에 제공된 한국인의 개인정보(330만명)는 피심인이 보유한 한국인 개인정보()의 5%를 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3) 관련 매출액 및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관련 매출액 산정)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과거 실적, 동종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종료기간은 2018년 6월이므로 관련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 연도인 2015년, 2016년, 2017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이에 피심인이 제출한 전 세계의 광고매출액 중 페이스북 서비스와 관련 없는 Instagram 등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페이스북 광고매출액으로 하고, 위반행위 종료 직전 3개년도('15~17년)의 년도별 광고매출액에 전 세계 페이스북이용자 중 대한민국 이용자(월별 활성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 222,707,374\$를 관련 매출액으로 한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라 1천분의 21를 적용한다.

이에 기준금액은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환산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에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를 적용하여 이다.

〈 페이스북 서비스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백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3년 평균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5.5. ~ '18.6.)하였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을 가 중한 이나,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 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을 감경한 로 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 [별표] I. 1. 에 따라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중단 시점 관련 자료와 "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의 기본 설정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허위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조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를 가중하며, 특별히 감경할 사유는 없다.

마. 과징금의 결정

Facebook Ireland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부 부과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6,748,701,210원이나41),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6,748,000,000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과징금 산출내역 〉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필수적 가중(50%) 필수적 감경(50%)	추가적 가중() 추가적 감경 없음	6,079,911\$	
	\rightarrow	→ 6,079,911\$	(6,748,000,000원)	

^{*}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

^{41) &#}x27;20.11.24. 환율 최종 고시 1,110원 적용

3.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제30조의2(개인정보의 이용 내역 통지)제1항, 제64조(자료제출 등)제1항 위반한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76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는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는 첫 번째 위반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시의 과태료인 1,000만원과 3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의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법 제76조	1 000	2,000	3,000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머.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6조 제1항제5호	1,000	2,000	3,000
투.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 제3항제22호	300	600	1,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대료 부과지침 제8조는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대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acebook Inc과 Facebook Ireland가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한 사안에 대해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 그 외 특별히 감경할 사유는 없다.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64조제1항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Facebook Inc에 2,800만원, Facebook Ireland에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구분	위반조항	위 반내 용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28①4호	암호화 조치 위반	1,000	_	△500	500
Facabaak Inc	§30조의2①	이용내역 통지 위반	2,000	_	_	2,000
Facebook Inc	§64 ₁	거짓 자료 제출 등 소 계	300	_	_	300
					2,800	
	§28①4호	암호화 조치 위반	1,000	_	△500	500
Facebook	§30조의2①	이용내역 통지 위반	3,000	_	_	3,000
Ireland	§64 ₁	거짓 자료 제출 등	300	_	-	300
소계						3,800
합 계						6,600

< 과태료 산출내역 >

4. 고발

Facebook Ireland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같은 법 제71조(벌칙) 및 제75조 (양벌규정)에 해당된다. 또한 Facebook Ireland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는 「(舊)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9조의2(고발)제1항에 따라 Facebook Ireland(법인)와 개인정보 담당 이사 ○○○○○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5. 결과 공표

피심인이 ①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거부·방해, ②제3자 제공 위반행위기간('12.5.~'18.6.)이 6개월 이상 지속, ③제3자 제공 개인정보 10만명 이상(최소 330만명 제공)인 경우는 「공표기준」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에따라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에 대한 위반행위 내용과 결과를 아래와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ДН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순번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2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제1항, 제28조(개인 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제30조의2(개인정보의 이용내역 통지)제1항 위반행위와 제64조(자료제출 등)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3(과징금 부과 등)제1항,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항 및 제69조의2(고발)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 각각에 의한 과징금·과태료 및 고발, 시정조치 명령, 결과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0년 11월 25일

위원장 윤종인 (서명)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원 강정화 (서명) 위 위 고 성 학 (서 명)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이 희 정

지성우 (서명)

(서 명)

위

위

원

워